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26일, 이철규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6년 2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6.5.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 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20.)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철규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26년 기준 2조 1,958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진행중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R&D 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

거나,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 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종료된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중 2025년 말까지 정산금이 미반납된 과제 건수는 총 655건으로, 미반납액은 314억 3,500만원으로 확인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금 발생액 316억 6,800만원 및 제재부가금 발생액 272억 8,100만원 중 2025년 말까지 미수납된 금액은 각각 환수금 143억 300만원 및 제재부가금 202억 8,100만원 등 총 345억 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2022년~2024년 결산 시정요구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음.²⁾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 집행 기준 및 정산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출연금·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회수계획수립 등 사전·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소기업의 휴·폐업 비율이 높아³⁾, 예금 압류 및 추심 절차 강화 등 환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산금 등의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①출연금·보조금의 집행·정산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의도치 않은 부정집행을 예방하고, ②정기점검을 통한 부실기업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정산금 회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출연금·보조금의 적절한 집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정회계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세 부지침」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⁵⁾, 「국가연구개

2) 연도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

– 2022회계연도 결산: (제도개선)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2023회계연도 결산: (주의) R&D 관련 제재부가금 징수비목 정정 및 장기미납액 징수 제고
– 2024회계연도 결산: (제도개선) 수탁 R&D 사업 정산금 등 수납 관리 강화 필요

3) '20~'25 R&D 정산회수금 및 환수·제재부가금 미납기업의 휴·폐업 비율 38.3%

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⁶⁾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하위법령을 통해 연구개발비 적정 사용을 위한 사전교육, 연구비 사용의 정밀검토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 점검, 부도·폐업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회수 유예 등 개정안과 유사한 시책을 실시 중으로,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방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술혁신 중소기업 등 관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률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기술혁신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 교육, 컨설팅 등의 기업 안내를 통해 출연금·보조금의 부정사용 및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연금·보조금 집행의 이상징후 발견 시 지급방식 조정을 통해 문제과제 발생을 방지하며,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휴·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납부 유예 및 분납 등 회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산

4) 「지정회계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침)

제6조(지정회계기관의 업무범위)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정회계기관이 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산 자문, 교육 등 관련 고객센터 제공

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3호)

제85조(연구개발비 회수의 유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